94. 농막제도 개선방안 강구

▸신규여부 신규 계속 ▸사업시기 임기내 임기후 ▸예산투자 예산 비예산 ▸사업주체 인천시 국가 민간

○ 정책목표

- 농막제도 개선방안 강구

· 농막의 범위 완화 및 설치기준 제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

*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

○ 정책개요

- 현 황

· 농막 연면적 20㎡는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, 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함.

· 농막에 편의시설(화장실, 정화조, 데크 등)설치기준 제한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임.

- 사업개요

· 농막의 범위 완화

* 연면적 확대 : (현재) 20㎡이하 → (개선)33㎡ 이하 **13㎡↑**

* 임시거주허용 : (현재)거주안됨 → (개선)영농철 한시적 허용

· 농막의 편의시설 기준 제도화

○ 추진실적

- '22. 7월말 : 군.구 농막 현황표(농막 편의시설 등) 조사.제출

○ 향후 추진계획

•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

• 추진일정

세부 추진상황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타 지자체 농막 설치기준 수집																				
농지법 개정 건의																				

-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농막제도 개선 방안 강구	항목	2	1	1			

- 재정투자 : 비예산

- 중앙정부의 협조(제도,재정,권한)
  - (제도) 농막의 범위 완화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제도화 농지법 개정

○ 미래의 모습(기대효과)

- 농막의 면적 확대 및 영농철 임시 거주목적 허용으로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
- 농막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도화로 기후변화(폭염, 집중호우, 폭설 등)위기 대응 및 휴식보장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